

SNS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

Sexual exploitation N(&) Share

강선혜, 이승혜, 석희진, 성미화, 정희진¹⁾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0년 이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사회문제화 되었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여러 제도의 도입과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성범죄가 과거와는 다른 유형들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2020년 발생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하 n번방 사건)’이 대표적인 예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여 성착취물을 제작·공유·판매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아동·청소년이 많았으며, 범죄수법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잔혹성을 가지고 있어 한국사회를 경악하게 했던 충격적인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기존의 성범죄와 다른 측면을 보이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있었던 여느 성범죄와 다르지 않다.

n번방 사건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이전에도 섹스팅, 그루밍, 딥페이크,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과 관련된 성범죄들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하지만 2020년을 전후로 디지털 성범죄의 변화가 미디어를 매개로 더욱 심화되었고 범죄 수법은 진화하였다. 이는 단순히 PC를 통해서만 가상의 온라인/사이버 공간을 접속할 수 있었던 2000년대 초반과는 달리, 점차 스마트폰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공간이 분절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 강하게 연계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휴대성, 이동성, 즉시성 등의 특성(이성식, 박정선, 2014: 5)을 가진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 격상되면서, 이와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및 청소년 사이버 비행과 같은 예상치 못한 범죄양상으로 부작용처럼 발현되었다(이성식, 강은영, 최수형, 2015).

1) (사)탁틴내일 이슈리포트 프로젝트 팀 (tacteen41@hanmail.net)

사이버 성폭력 또는 온라인 성폭력 대신 디지털 성폭력·성범죄를 주로 사용하게 된 배경으로 관련 범죄행위의 변화 양상을 들어 설명할 수 있다(장다혜, 김수아, 2018). 과거에는 음란사이트나 웹하드에서 음란물을 수신·접촉하던 단순하고 수동적인 행위가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인해 개인이 직접 불법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지인에게 공유하는 등의 재유포 행위까지 손쉽게 가능해진 것이다(이지선, 이성식, 2019: 6).

비동의 촬영이나 비동의 유포행위와 같은 범죄행위는 단순 통신 환경을 넘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공간의 연관성을 가지며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이버 성폭력 또는 온라인 성폭력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제작, 유포, 소비, 그리고 참여 행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장다혜, 김수아, 2018). 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이버 성폭력이나 온라인 성폭력이라는 용어는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한 피해실태를 제대로 포섭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디지털화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복제와 전송이 쉬운 디지털의 특성은 기존 성범죄보다 피해자에게 더욱 큰 고통을 주기도 한다. 몇몇 가해자들은 온라인에서 유통할 목적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이 직접 음란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공범 일부는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성착취물을 촬영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였다. 디지털 성범죄는 인간존엄을 침해하는 성 상품화로서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이며, 이미지 혹은 영상을 기반으로 한 성착취이자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노력은 가시적이지 않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그 위험성을 예상할 수 없는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디지털 관련 성범죄는 향후 보다 다양한 문제점을 양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대한 대처도 쉽지 않을 것이 우려된다.

실제, 영국 아동성착취 수사기구(CEOP)에 의하면 2009~2010년 1년 동안 온라인 성착취 피해 신고 수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총 신고 중 64%가 온라인 그루밍에 관한 것이었고, 온라인 성피해 신고 수가 늘어난 주된 이유는 소셜 네트워크와 웹캠을 사용한 성착취 유형이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또한 신고내역은 아동에게 성착취물을 보도록 유혹하거나 성적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CEOP, 2010).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n번방 방지법이 제·개정 되었고, 2021년 3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온라인 아동 그루밍법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이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는 한번 삭제된 영상물을 다시 업로드 해 수익을 창출하는 해비 업로더에 의한 유포도 많지만, 누구나 이용 가능한 SNS를 통해서도 지속적인 유포와 홍보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개정과 더불어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성착취에 대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나 SNS와 같은 사업자와 기업을 제한하기 위한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실제 탁틴내일에서 디지털성범죄 Safe Seoul 가해자 추적사업(2020)을 통해 트위터에서 1년 동안 모니터링 한 결과, 성착취물 유통과 홍보가 매우 용이하며, 1년에 1,909건에 달하는 성착취물의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고 된 성착취물의 대응 및 대처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성착취물의 삭제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n번방 이후 온라인을 통한 성착취물의 문제점에 대해 자각하고 있지만, 누구나 이용 가능한 SNS 플랫폼은 자율규제²⁾의 시스템을 따르기 때문에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SNS를 통한 성착취물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기업이 자율규제 시스템에 따라 어떻게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SNS 서비스를 기반으로 성착취물의 실태를 점검하고, 기업의 자율규제 시스템이 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 신고 절차와 대응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자 한다. 나아가 자율규제 시스템의 제한점에 대해서도 분석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해시태그를 통한 SNS 성착취 물의 유통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SNS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신고 대응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SNS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자율규제 시스템의 제한점

2) 자율 규제 체제란 '민간 영역이 전통적인 정부 영역에 해당되었던 규제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 영역은 이러한 민간 영역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함으로써, 규제의 합리화와 효율성을 추구하는 규제 방식'을 말한다(인터넷자율규제와법, 2014. 4. 15., 황승희)

2. 이론적 배경

1.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개념

지난 20년간 디지털 성범죄를 가리키는 용어가 조금씩 변화하여 왔다. 2017년을 기점으로 ‘디지털 성범죄’와 ‘디지털 성폭력’ 두 개 용어가 학계에서 많이 사용되었다(최소윤, 한민경, 2020).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국내 학자들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를 포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불법촬영과 불법유통은 물론, 음란물을 제작·유포하고 보복이나 금전적, 기타 악의적 목적으로 성적 촬영물을 공개, 유포 협박,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조주은, 최진웅, 2018; 최용성, 곽대훈, 2020; 윤덕경 외, 2020). 특히 최용성과 곽대훈(2020)은 디지털 성범죄를 넓은 의미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여성 대상 젠더폭력 행위의 디지털 성폭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포괄적 해석의 장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지인능욕 및 딥페이크 포르노와 같은 범죄행위도 디지털 성범죄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사이버 성폭력/성범죄/음란물과 비교해 볼 때 디지털 성폭력 개념화 시도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으며, 비단 컴퓨터에 한정하지 않고 디지털 기기를 악용한 여성 대상 일체의 성범죄로 보는 시각이 다수이다. 처음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구체화한 ‘디지털 성범죄아웃’(DSO)의 전선미와 하예나(2017)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여성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로 디지털 성폭력을 정의하고, 가해자를 한 개인이 아닌 집단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사이버 또는 온라인 성폭력이 디지털 성폭력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사이버나 온라인의 개념은 통신환경을 기반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통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유포, 참여, 소비만을 규정한다는 한계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복제 가능성,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유기적 관계성 등의 특징 소비형의 유형 개념으로 정리하였다(전선미, 하예나, 2017).

디지털 성폭력 개념을 행위 이론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예컨대, IT, 정보통신 등의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하는 행위적인 측면과 현실이 아닌 사이버 또는 디지털 공간에서 범행이 일어난다는 공간적인 측면을 접목시켜 온라인·디지털 장치를 매개로 가하는 성폭력으로 개념화하는 것이다(조소연, 2017). 이수연 외(2014)는 온라인 상에서 상대가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나 정보, 음란한 영상 등을 전달하거나 상대의 신체, 성적 관심, 행위에 대한 언급, 성적행위나 신체 노출 요구, 성적 욕설, 성적 대화 요구, 성추행 위협, 성관계나 성매매 제안 등의 행위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온라인 성폭력을 정의하였는데, 이는 사이버 성폭력을 정의하였던 방식과 매우 흡사하여 온라인 성폭력은 사이버 성폭력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이해된다.

많은 연구들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여성 대상 성범죄로 디지털 성폭력을 개념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박수연 외, 2017; 김한균, 2017; 김현아 외, 2018; 김경희 · 김수아, 김은경, 2019 등), 세부적으로 어떤 행위와 유형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박수연 등(2017)은 여성 대상 성차별 · 성폭력 행위, 실질적인 여성의 신체 착취, 유포협박을 통한 성매매 강요나 알선 등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해석을 제시한 반면, 최란(2018), 장다혜와 김수아(2019)는 현행 성폭력처벌법과 맞닿아 있는 개념으로 보았다. 그리고 김소라(2019b)는 디지털 성폭력 개념에 이미지 · 사진 합성 및 편집, 성행위 영상에 다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새로운 범죄유형도 포함하고자 하였다.

이와 달리, 오세연과 신현주(2020)의 연구는 법적인 관점에서 디지털 성폭력 범죄는 성폭력 처벌법상에서 범죄로 규정한 것으로, 디지털성범죄는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이버 음란물 유포죄를 포함하는 개념 혹은 사이버 범죄이긴 하나 성폭력범죄는 아닌 개념으로 양자를 구분하였다. 한희정(2018)은 사이버 성폭력을 디지털 성폭력, 온라인/인터넷 기반 성폭력, 성적 이미지 조작/착취 성폭력, 온라인 기반 성매매, 온라인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도 포함하는 큰 개념으로 보았다. 다시 말해, 사이버 성폭력은 디지털 성폭력을 포함하고 아우르는 더 큰 개념, 즉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성적 괴롭힘, 성폭력의 양상 전반을 일컫는 상위 개념으로 해석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디지털 성폭력 개념이 여러 용어들과 의미상의 명확한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긴 하지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불법촬영 · 유포 · 소비의 행위 맥락과 온라인상 네트워크의 매개성을 보여준다는 점, 그리고 젠더폭력적인 성격과 범죄성까지 내재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성폭력’ 용어 사용은 유의하다고 해석한다(김소라, 2018).

<표 1>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유형	세부유형	사례
비동의 촬영 (및 제작)	1. 은닉 촬영 (공공장소, 사적 공간) 2. 화상녹화 3. 성행위/성폭력 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인구가 밀집된 공공장소에서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촬영 (불법 도촬, 소위 ‘몰래카메라’) ▪ 신체 일부 촬영(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 용변 보는 행위 촬영 ▪ 성행위 장면 촬영
비 동 의 유 포	비동의 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드촬영물, 자위영상, 성적인 촬영물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단톡방, SNS, 포르노사이트, 커뮤니티 등 유포 ▪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 ▪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
	재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촬영물 등임을 알면서 다운받고 다시 유포 ▪ 주로 금전적 수익을 목적으로 대량으로 불법촬영물을 업로드 하여 유포
	유포 협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및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 ▪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유포 협박 ▪ 다시 본인과 사귀면 유포하지 않겠다고 희유 ▪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소비	1. 영리 목적으로 유포 방조 및 협력 2.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을 시청, 공유, 저장 등의 방식으로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하드, 포르노사이트 등 플랫폼 사업자 ▪ 웹하드, 포르노사이트 등의 플랫폼 이용자 ▪ 피해영상을 확산시키는 유포자 ▪ 피해영상 시청자

최소윤, 한민경, (2020) 사이버 음란물에서 '기술매개 젠더기반 폭력'까지 :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재인용

김소라(2018), 한희정(2018) 등이 언급했듯,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용어는 국내 법률 용어를 포함하여 아동·성인 대상 사이버 성폭력의 정의로서 유의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UN과 인터폴 등 국제사회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여 어떠한 성적 착취 및 학대를 가하는 행위를 ‘온라인 아동성착취’라 정의하고 있으며 (Interagency Working Group, 2016). OPSC와 같은 국제협약서에서도 해당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016년 엑팟 인터네셔널과 인터폴, UN등을 포함한 18개 국제기구가 협력하여 출판한 아동성착취 및 성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용어 가이드라인(이하 루셈부르크 가이드라인)에서는 온라인 아동 성착취를 “...온라인 환경과 연관성을 가지고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성적으로 착취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즉, 성착취를 야기하거나 아동이 성적으로 착취를 당하는 원인이 되는, 혹은 그러한 성착취를 기록하는 이미지나 기타 자료가 제작, 구매, 판매, 소유, 배포, 또는 전송될 수 있도록 야기하거나 그 원인이 되는 정보통신

기술의 모든 형태의 이용”으로 정의하고 있다(Interagency Working Group, 2016).

1995년 더킨과 브라이언트는 사이버스페이스와 범죄 양상에 대한 그들의 연구에서 “우리 사회에 혁명을 일으킨 컴퓨터는 범죄와 일탈 행동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성적 탈선의 매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성이 크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Durkin & Bryant, 1995)”라고 언급했다. 그들이 1995년에 벌써 예상했듯이, 컴퓨터가 보편화되고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마약, 인신매매, 불법무기거래, 조직범죄 등의 양상이 변화했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도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함께 급변하였다. 이제 아동성착취 가해자들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장소와 상관없이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접근이 가능하고 국경에 상관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익명성과 1:1 공간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유인, 설득 또는 그루밍하거나 협박, 강요를 통해 피해자가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온라인 아동성착취는 흔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잘 알려진 아동성착취물 제작·유포·시청을 포함하여 온라인 그루밍, 랜덤채팅, 섹스팅, 딥페이크, 게임내 아동성애화, 온라인 스트리밍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모든 양상의 아동 성착취를 포함한다. 특히 아동성착취물의 경우 10년도 전부터 국제사회에서 조명되어온 문제이며, 엑팟 인터네셔널과 인터폴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3천만에서 5천만 건의 아동성착취물이 매일 거래되고 피해아동의 연령이 0세부터 시작하는 등 학대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Interpol & ECPAT, 2018). 또한 2016년 캐나다의 아동보호센터가 실시한 아동성착취물 조사에 따르면 46,859명의 각기 다른 아동이 아동성착취물로 인한 피해를 입었고, 그 중 78.3%는 12세 미만 아동이었으며 (Canadian Centre for Child Protection, 2016), 인터폴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16년 6월 59개의 나라에서 8,994명의 아동성착취물 피해아동이 특정되었다(Rimer, 2019).

그 외에도 온라인 커뮤니티 및 소셜 미디어를 사용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에게 접근하는 온라인 그루밍, 섹스팅 등의 범죄가 근래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re, 2010) 캐나다, 호주, 벨기에 등 여러 국가에서 이를 겨냥한 법률 개정안이 새로이 적용되고 있다. 그 중 2017년 호주에 도입된 ‘칼리 법(Carly’s Law)’은 15세 칼리가 온라인 그루밍 범죄로 인해 목숨을 잃은 뒤 그의 부모가 설립한 Carly’s Foundation을 통해 건의되고 통과된 주 법이다. 국내법의 경우, 2021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에 온라인 그루밍이 포함되었다.

2. 아동성착취 관련 정책

아동성착취는 UN 아동권리협약, OPSC, 란사롯데 협약,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등 여러 국제협약에서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처벌되는 범죄이다. 아동성착취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OPSC 가이드라인에 온라인 상에서의 아동성착취를 추가하여 개정하는 등 적극적 개입을 촉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2021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서비스 제공자들의 온라인 아동성착취 관련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 포함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또한 온라인 아동성착취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경우 급증하는 온라인 아동성착취에 대응하기 위해 연간 약 37억 달러를 안전 및 보안 사업에 투자하고 있고, 안전 및 보안 팀의 실무자를 3만 5천명 이상으로 3배가량 확대하였으며, 15,000명의 콘텐츠 검토자(content reviewers)가 매일 200만 건의 콘텐츠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안전과 성착취 피해 및 범죄패턴 등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전세계 500여개 파트너와 협력 중이며, 안전자문위원회를 2009년에 설립하여 분기별로 온라인 플랫폼의 안전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8년 기준 한 분기에만 870만개의 콘텐츠가 아동 나체 이미지 혹은 아동성착취와 관계있다 판단되어 삭제조치 되었고, 99%가 사용자 신고 이전에 AI & 머신러닝 시스템에 의해 발견되어 삭제조치 되었다.

트위터의 경우 아동성착취 무관용 법칙을 시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성착취가 급증함에 따라 2020년 10월 온라인 아동성착취를 비롯한 여러 규정을 새롭게 개정하여 사용자에 제공했다. 또한 트위터의 서비스가 언어 표현에 집중된 만큼 정책 신설 및 개정을 위해 사내 팀과 트위터 신뢰 및 안전(Trust & Safety) 위원회의 의견을 수집하고 연구를 통해 외부 언어를 개발, 수백만 개의 트윗을 평가할 수 있는 검토자용 지침을 작성한다. 또한 트위터는 사용자가 생활의 모든 측면을 보고 반대되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토론할 것을 권장하는 서비스의 특성 상 신고 콘텐츠에 대한 전후 관계를 먼저 확인하며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트윗 수준, 쪽지 수준, 계정 수준으로 나누어 적합한 조치를 취한다. 추가로 사용자의 권리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플랫폼 조치 이의신청 접수 양식 또한 제공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을 타고 급격히 증가하며 치밀해지고 있는 온라인 성착취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 또한 AI, 머신러닝, 언어분석 등 새로운 기술과 정책을 도입하고 있

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한 온라인 그루밍과 아동성착취 행위는 만연하다. 2021년 1월에는 미국에서 한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SNS 플랫폼을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탁틴내일에서 2020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한명의 활동가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한 아동성착취 관련 게시글만 1,909건이었고(서울시, 탁틴내일, 2020), 아동보호기관과 사이버성폭력 대응 기관 등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삭제요청을 한다 해도 게시자에 대한 실질적인 형사 처벌은 어려운 현실이다.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 모니터링 대상 SNS 선정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대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SNS 플랫폼은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DMC미디어³⁾에서 2020년 1분기(1월-3월)에서 10대부터 50대까지 국내 소셜 미디어 연령별 월평균 이용자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1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는 1위 페이스북(Facebook), 2위 인스타그램(Instagram), 3위 트위터(Twitter)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모니터링 SNS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표 2> 모니터링 SNS 선정

SNS	SNS 설명
페이스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방침<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어 세계 연결■ 제공서비스<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화된 경험 제공- 중요한 사람 및 단체와 연결- 개인이 관심을 가질만한 콘텐츠 및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 전 세계 어디서나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
인스타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방침<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관계를 강화■ 제공서비스<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의 관심 경험을 공유하여 관계 강화- 관심사 관련 광고, 제안 및 기타 홍보 콘텐츠 제공■ 기타 : Facebook 계열사
트위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방침<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사람들이 공개 대화에 자유롭고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대화의 장 제공■ 제공서비스<ul style="list-style-type: none">- 답글을 통한 사용자 간 소통 (사용자의 발언권 보호 및 존중)- 검색을 통한 대화 화제 수단 제공

3)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07/2020090700514.html

국내 소셜 미디어 연령별 월평균 이용자 수 단위: 명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1위	 221만	 493만	 440만	 502만	 544만명
2위	 191만	 386만	 319만	 298만	 297만명
3위	 86만	 178만	 268만	 266만	 177만명

※월 평균 이용자 수는 2020년 1분기(1~3월) 내 월별로 발생한 이용자 수의 산술평균값

자료=DMC미디어

[그림 1] 국내 소셜 미디어 연령별 월평균 이용자 수 (단위: 명)

(2) 성착취 관련 용어(해시태그) 선정

다음으로 SNS 성착취 관련 용어를 선정하기 위해 2020년 (사)탁틴내일의 서울시 사업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던 결과를 참고하였다. 그 결과, 1차적으로 주로 SNS상에서 성착취물을 게시하는데 쓰이는 157개의 해시태그를 선정하였다. 이중 중복되는 단어나, 비슷한 단어들을 제외하고 총 122개의 해시태그를 선정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각 SNS별로 사용되는 해시태그의 특성이 있지만,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3개 SNS의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해시태그 검색어 선정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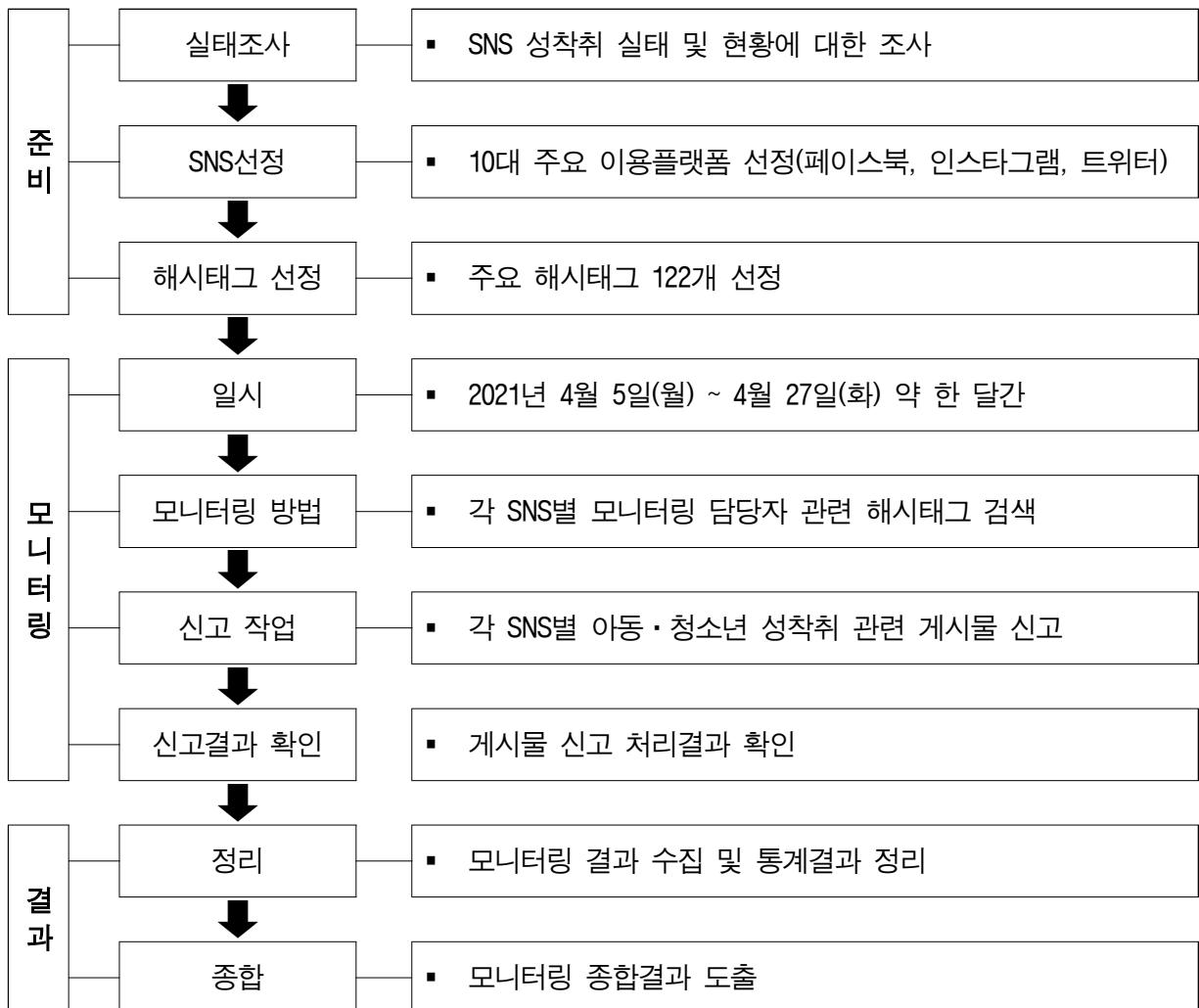
<표 3> SNS 해시태그 검색어 선정 결과

구분	검색어	개수
신체	빨통(가슴), 정액, 검스(검은색 스타킹)	3
행위	얼싸, 몸싸, 질싸, 입싸, ○씨, □씨, ♂씨, 자위, 돌림빵, 섹파, 실섹, 폰섹, 영통, 오프만남, 오프, 건오, 건전오프, #sëx	18
아동 성착취 및 영상물 /판매 포함	메가, mb, 자위영상, 자영, 영상나눔, 영교, 야사, 야동, 영딸, 맞딸, 아자르, 로리, 끄르, 희귀영상, 희귀, 희귀야동, 업스, 근친, 티모, 티모녀, 스파이더, 교복, 몸사, 중딩, 고딩, 초딩, 영상판매, 야1동, 순수녀, 디바의자, 06개조아, BJ에디린, 파란후드, 파랑후드, 쿨거래, 꿀매, 쿨거, 모음집, 영상교환	39
BDSM 용어	노예, 조교, 조련, 야노(야외노출), 야스(야외섹스), 골든, 스캇, 야외, 암캐, 육변기, 변녀, 협박플, 펌돔, 펌섭, 수치플, 복종, 걸레, 개보지, 오나홀(자위도구), SM,	20
지인능욕	박제, 지인박제, 지인능욕, ♂○♀○, 능욕, 지인, 지능방, 지인능욕방	8
합성	연예인, 아해가오, 합사, 합성사진, 딥페, 딥페이크, 지인합성	7
일탈	섹트, 일탈계, 섹스타그램, 섹스타, 섹그램, 일탈, 1탈, 1tal, 색계, 야스타그램	10
영상물 관련	ㅅㅇㅂ(수위방), 19금, 19방	3
일탈	섹텍, 섹태그, 섹테그, 섹코드, 검은방, 섹코드01, 섹코드02, 섹코드001, 섹코드002, 19asmr	10
섹코드	#sëx��tâckgö, #cccccccccccccccccccc, #eó3, #	4
합 계		122

2) 연구방법

(1) SNS 내 성착취 현황 모니터링

모니터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2021년 4월 5일(월) ~ 4월 27일(화)까지 약 한 달간 3개의 SNS를 대상으로 3명의 담당자가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으며, 제시된 해시태그를 검색창에 검색하는 방식으로 검색결과에 따른 게시물, 계정의 게시물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게시물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보이는 게시물은 SNS 신고창구를 통해 신고하였고, 신고처리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및 신고내역에 대한 사항은 증빙자료로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자세한 모니터링 과정 및 절차는 다음 [그림 2]과 같다.



[그림 2] 이슈리포트 모니터링 과정 및 절차

4. 연구결과

1) SNS 성착취 해시태그 모니터링 결과

3개 SNS의 모니터링 결과는 다음과 같다.

페이스북은 122개의 해시태그 중 29개의 해시태그에서 성착취 관련 게시물이 검색되었으나, 29개 중 11개의 해시태그(근친, 중딩, 고딩, 야노, 변녀, 능욕, 섹스타그램, 지인능욕방, 지인합성, 합사, 연예인)는 검색 결과 중 1~2개의 게시글 만이 성착취 관련 게시물이었다. 이 경우에는 최근에 작성된 게시글로 특정 페이스북 그룹 안에서 작성된 게시글로 다수 나타났다. 19금, 야동 등을 공유하는 그룹들에서 성착취물 교환, 판매를 홍보하거나 성착취물 기부를 요청하는 글이 게시되며 성착취 관련 해시태그를 사용하였다.

또한, 청소년 유해 및 불법 정보인 인터넷 성인방송 사이트, 성매매 업소, 조건만남 사이트, 응큼톡 같은 채팅앱, 불법도박 사이트, 불법촬영물 사이트 등을 홍보하는 해시태그가 총 33개⁴⁾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는 대다수가 2~3년 전 작성된 게시글로 성착취 관련 청소년 유해 및 불법정보를 홍보하며 성착취 관련 해시태그를 사용하였다.

페이스북 모니터링 결과, 개인의 게시글에 대한 자율규제 정책 가이드라인 운영은 원활하게 되고 있으나, 그룹에서 이루어지는 게시글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게시된 청소년 유해 및 불법 정보에 대한 게시글은 삭제되는 것으로 보이나, 과거에 작성된 게시글은 삭제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스타그램은 총 122개의 해시태그 중 18개의 해시태그에서 성착취 관련 게시물이 검색되었으며, 관련 해시태그를 활용하여 SNS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22개 중 104개의 해시태그는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해시태그가 비활성화 되어 게시물이 보이지 않도록 차단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인스타그램은 관련 해시태그를 검색할 때, ‘일부 게시물이 Instagram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해시태그 검색어의 최근 게시물이 숨겨졌습니다’라는 안내 메시지와 함께 최근 또는 인기 있는 게시물이 보이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었다.

또한 성착취 관련 해시태그의 연관검색어가 등장하지만 클릭하여 들어가면 해시태그 게시물이 없거나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인스타그

4) 성착취 관련 해시태그 29개 중 일부 중복된 수.

램 자율규제 정책 가이드라인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페이스북은 글을 통한 페이지나 그룹을 위주로 활동하게 되고 인스타그램은 사진 게시를 위주로 하고 있는 SNS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에 따른 규제 방법의 차이는 가지고 있으나 자율 규제 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 온라인 성착취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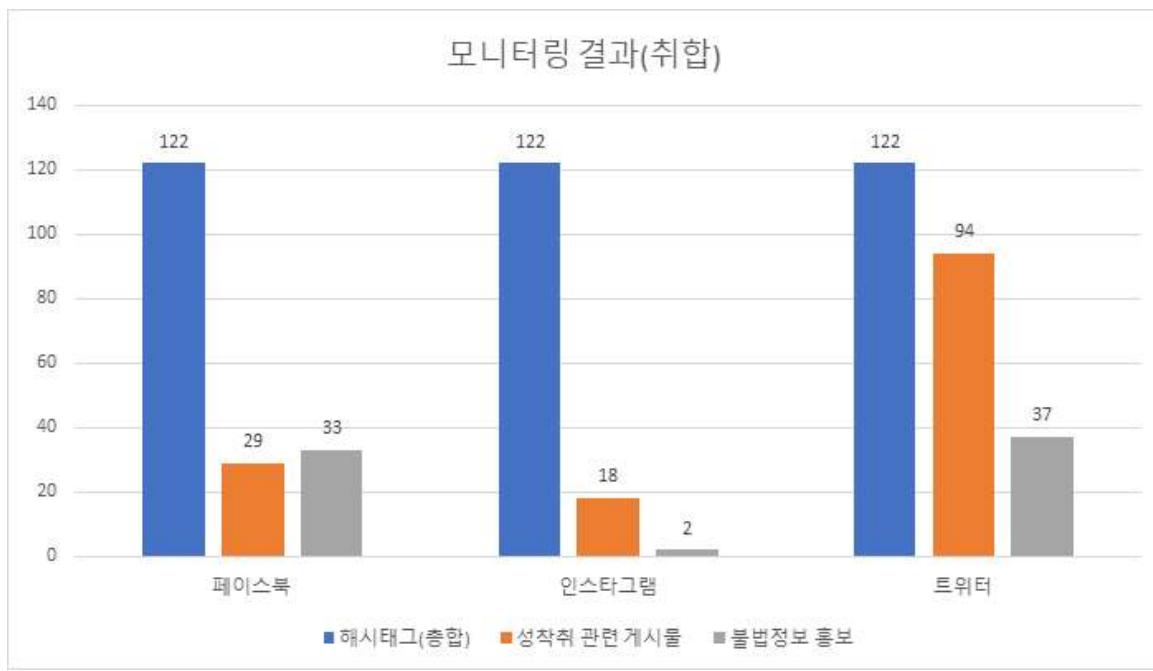
트위터는 122개의 해시태그 중 94개의 해시태그에서 성착취 관련 게시물이 검색되었다. 그 중 검색결과의 상당수가 성착취물 교환 및 판매, 지인능욕 합성 제안, 청소년 대상 성매수 제안, 분양, 노예 구함, 성착취 관련 텔레그램방 공유 등 다양한 성범죄와 관련된 게시글이 나타나 트위터 상의 성착취가 심각함을 드러난다. 특히, 트위터에서는 성착취물 교환, 판매, 사진합성, 성매매 등 구인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트윗을 게시하면서 성착취물이나 해외 포르노 영상을 게시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이는 트위터는 디지털 성착취에 관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트위터는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의 성착취 대응 기관 National Center on Sexual Exploitation(NCOSE)에서도 성착취를 조장하는 기관 중 하나로 지목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를 배포하고 성매매를 촉진시키는 플랫폼으로 지목되었다(탁틴내일, 2020 재인용). 트위터 또한 성착취에 대한 자율 규제 정책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SNS 해시태그 모니터링 결과(취합)

단위: 건(%)

구분	해시태그(총합)	성착취 관련 게시물	불법정보 홍보
페이스북	122	29 (24%)	33 (27%)
인스타그램	122	18 (15%)	2 (2%)
트위터	122	94 (77%)	37 (30%)
합 계		141	72

※ 불법 정보에는 성매매 업소, 조건만남 사이트, 도박 사이트, 채팅앱, 인터넷 성인방송 사이트, 불법촬영물 사이트 홍보 등이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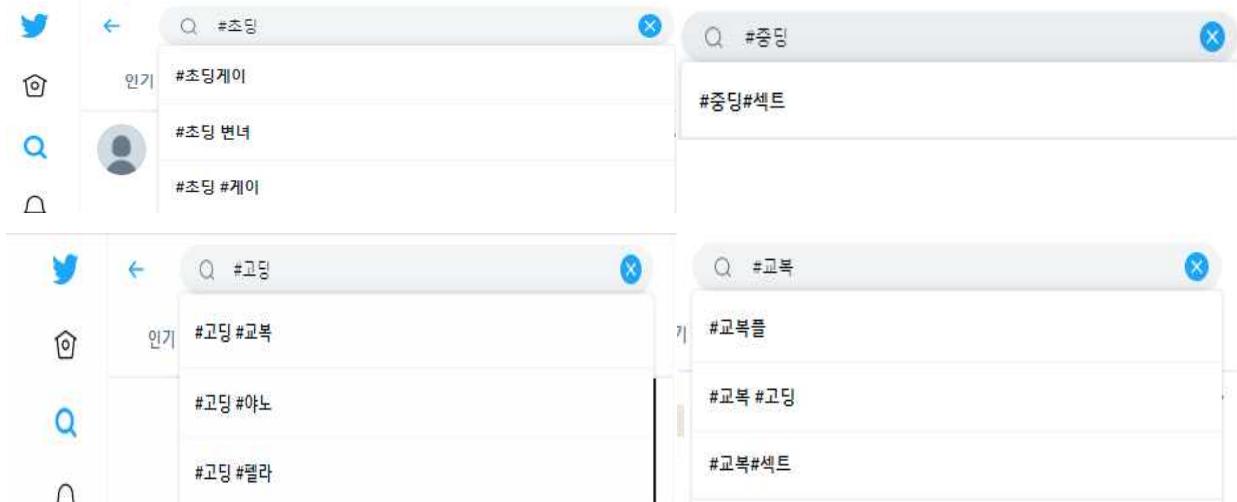
[그림 3] SNS 모니터링 결과

2) SNS 성착취 경향성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각 SNS의 경향성을 비교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딩, 중딩, 고딩과 같은 검색어는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서는 개인이 올린 교복 사진, 졸업식 등의 일반적인 게시글의 검색 결과가 다수 나타났으며, 성착취 관련 게시글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페이스북은 1건이 나왔으며, 인스타그램은 성착취 관련 게시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인스타그램의 경우에는 검색 결과 중 일부는 청소년이 운영하는 일탈계 계정이 관련 해시태그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딩의 경우에는 게시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위터는 초딩, 중딩, 고딩 모두 아동 성착취물 판매, 담배 대리구매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청소년이 운영하는 일탈계 계정이 관련 해시태그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딩, 중딩, 고딩을 검색하였을 때 연관 해시태그가 제시되었다. 초딩을 검색하였을 때 #초딩게이, #초딩 변녀, #초딩 #게이가 함께 해시태그가 제시되었다. 중딩은 #섹트가 제시되었으며, 고딩은 #교복, #야노(야외노출), #펠라(구강성교)가 함께 제시되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 초딩, 중딩, 고딩에 대해서도 트위터는 성착취와 관련된 해시태그가 많이 사용되며 연관 해시태그로 제시되는 것으로 나타나 트위터를 통해 일어나는 성착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트위터에서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도

가출하거나 용돈 필요하면 디엠 달라고 하는 등의 그루밍, 능욕, 박제, 일탈계, 성착취물 판매 등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며 ‘초딩’이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그림 4] 트위터 연관 해시태그 화면

페이스북은 성착취 관련 검색어, 해시태그의 경우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입싸(입에 사정), 열싸(얼굴에 사정)하는 은어로 ○씨로 검색하였을 때 트위터에서는 성착취 관련한 게시글이 검색결과로 나왔으나, 페이스북에서는 인싸, 아씨, 오타 등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페이스북의 자율 규제 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착취 관련 해시태그에 대해 최대한 일반적인 게시글을 위주로 검색결과를 보여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성착취 게시글이 검색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아동 성착취 관련한 다수의 해시태그를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최근 게시글을 검색되지 않게 하고 있으며, 관련한 해시태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이렇듯, SNS 운영사에서 아동 성착취와 관련하여 자율 규제 정책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이용자들이 SNS를 이용하는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트위터에서는 피해자 옷차림 등을 해시태그로 하여 특정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지칭하는 해시태그가 사용되고 있으며, 관련 해시태그로 성착취물 대량 판매, 공유 등이 쉽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제재가 없어 성착취물 제작, 판매, 유포 및 성매수, 그루밍 등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나는 통로로써 이용되고 있다. 이렇듯, 트위터에서는 아동 성착

취 관련 자율 규제 정책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으나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강조함으로써 성착취 문화 형성에 일조하고 있다.

이렇듯, 아동 성착취 관련 해시태그 이용 및 검색결과의 차이는 각 SNS 운영사에서 어떠한 관점으로 자율 규제 정책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른 보호정책을 통해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이용자들에 의해 형성된 성착취 관련한 문화를 SNS 운영사에서 제재하여 아동 성착취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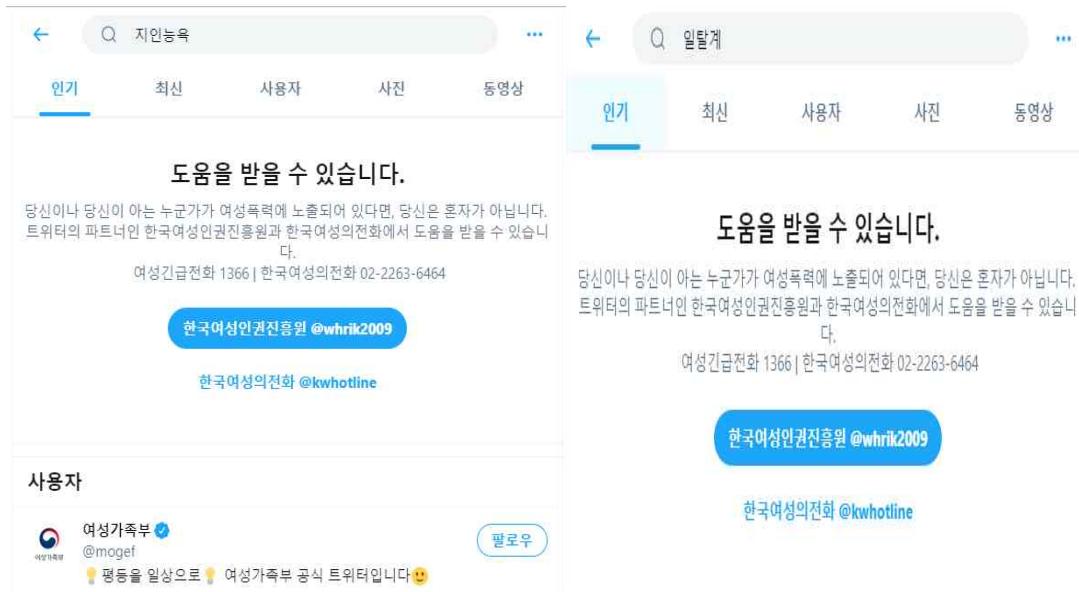
일부 게시물이 Instagram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1탈의 최근 게시물이 숨겨졌습니다. [더 알아보기](#)

[그림 5] 인스타그램 가이드라인 위반 안내 문구

페이스북에서는 해시태그 ‘로리’의 경우에만 아동 성범죄 관련한 경고문구를 게시하였고 트위터에서는 해시태그 ‘지인능욕’, ‘일탈계’, ‘섹트’의 경우에는 안내문구 및 단체 트위터 계정을 안내하고 있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경고문구나 안내문구가 게시되지 않았다. 경고 및 안내문구는 성착취와 관련해서만 사용되는 해시태그의 경우 필수로 게시하여야 하며 관련 게시글 결과를 제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트위터의 경우 안내문구를 게시하고 있으나 ‘지인능욕’으로 검색하였을 때 검색결과에 지인능욕 합성 사진 게시, 지인능욕 해준다는 등의 게시글이 함께 검색되었다.



[그림 6] 페이스북 아동 성착취 검색어 경고문구(모바일 및 PC)



[그림 7] 트위터 안내 문구

각 SNS별 성착취 관련 특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페이스북은 소수의 그룹을 통해 성착취물 공유, 판매, 구매 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 그룹은 ‘19금’이라고 하면서 성착취물을 음란물로 소비하고 있으며, 청소년도 쉽게 가입할 수 있어 이와 관련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인스타그램은 신음소리 공유, 사진 게시 등이 소위 ‘일탈계’ 계정을 통해 일어나고 있어 그루밍 방식의 성착취에 대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인스타그램의 제재로 인해 한국

어로 된 해시태그가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섹코드’라고 불리는 특수기호나 이모티콘을 활용한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게시물을 다수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그림 8] 과 같이 다양하게 정책 위반을 피하는 방법을 마련하여 해시태그도 진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몇몇 게시물의 ‘섹코드’는 차단되기도 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새로운 코드가 생성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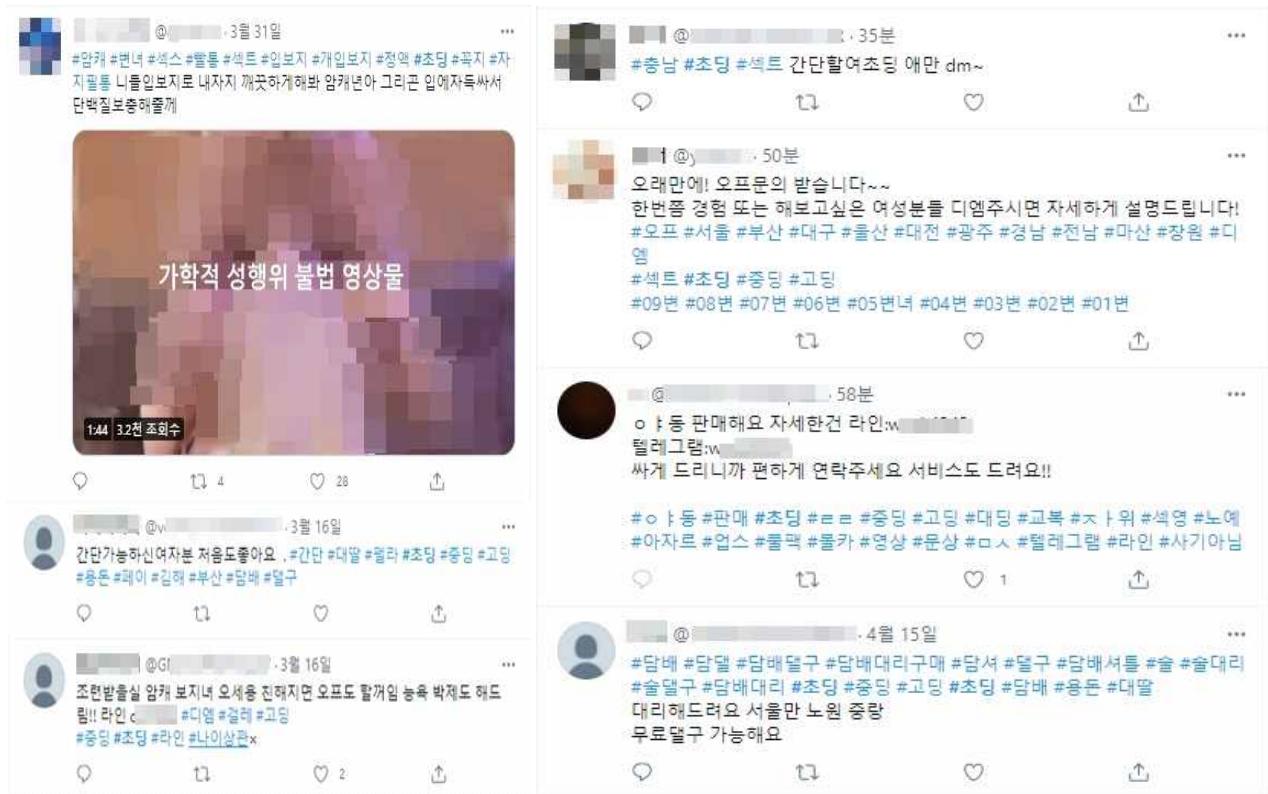
트위터는 성착취물 제작, 판매, 유포 및 지인능욕 합성, 성매수, 그루밍 등 다양한 디지털 성착취가 일어나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하에 특정 피해자를 지칭하는 해시태그, 초·중·고딩의 연관 해시태그 등 성착취를 용이하게 만드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에, 트위터의 자율 규제 정책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편성될 필요가 있으며, 성착취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8] 페이스북 19금 그룹의 게시글
(성착취물 판매, 교환 등)



[그림 9] 인스타그램 섹코드 해시태그



[그림 10] 트위터 #초딩 검색 게시글

* [그림 10]의 ‘간단’은 성매매 은어로 유사성행위 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매수 제안을 하고 있다.
‘델구’는 대리구매의 줄임말로 술, 담배 등을 성인이 대신 구매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것을 뜻함.

<표 5> SNS 해시태그 모니터링 경향성

구분	내용
페이스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페이스북 그룹을 통한 성착취물 판매 중딩, 고딩은 일반적인 게시글 나타나며, 초딩 관련 게시글 없음 성착취 관련 해시태그 검색 시 일반 게시글 우선 보이도록 함 ‘로리’ 해시태그만 아동 성범죄 경고문구 표시
인스타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탈계 계정 다수 나타나며, 섹코드와 같은 특수 해시태그 사용 중딩, 고딩은 일반적인 게시글 나타나며, 초딩 관련 게시글 없음 성착취 관련 해시태그 지정하여 최근 게시글 미표시 안내 및 경고문구 없음
트위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딩, 중딩, 고딩 모두 아동 성착취 관련 게시글 다수 나타남 특정 피해자 성착취물 지칭 해시태그, 성착취물 대량 판매, 성매수 제안 등 다양한 디지털성범죄 게시글 다수 나타남 성착취 관련 해시태그 제한 없으며, 청소년 연관 해시태그로 #야노, #펠라, #섹트 #번녀 등을 제시함 ‘지인능욕’, ‘일탈계’, ‘섹트’ 해시태그만 도움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구 표시

또한, SNS 모니터링을 통해 최근 인스타그램, 트위터를 통해 월 구독제 또는 방송 어플을 홍보하고 이러한 어플들을 통해 성착취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월 구독제 어플은 Liky(라이키), Fanding(팬딩) Only Fans(온리팬스) Patreon(패트리온) 등이 있다. 월 구독제 어플들은 ‘스타’ 가 되라고 하면서 팬과 1:1로 음성, 사진, 영상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트위터 등을 통해 성착취물을 판매하던 성착취 가해자들이 월 구독제 어플로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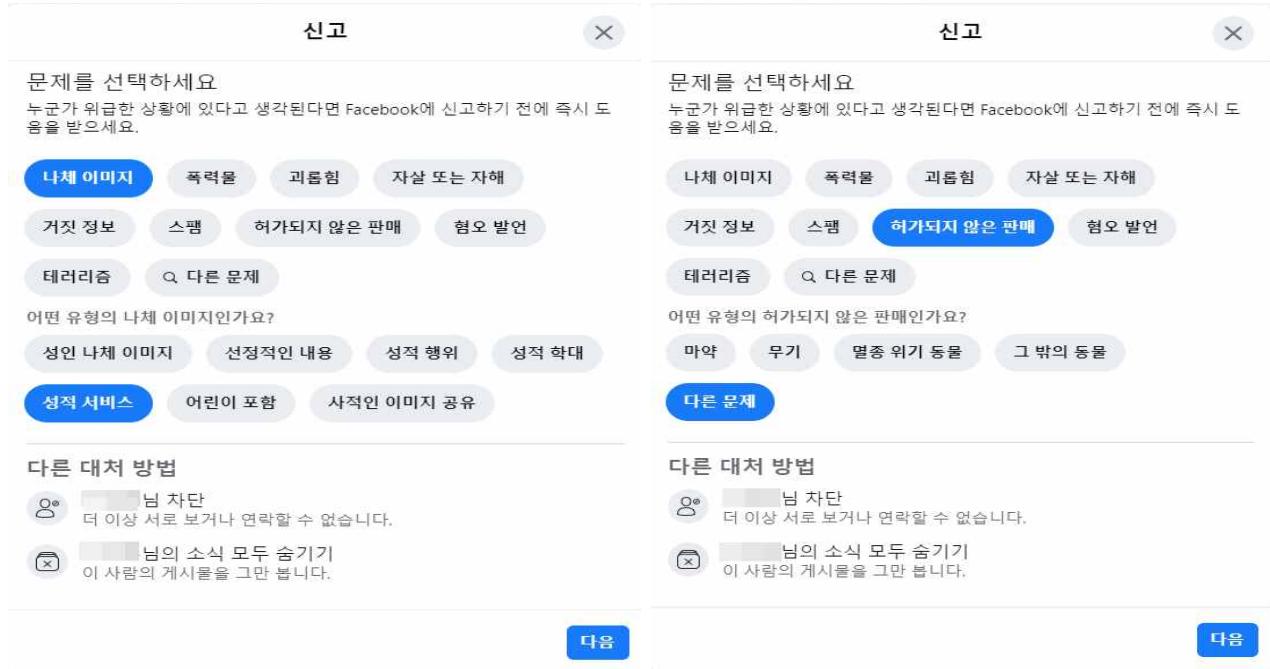
방송 어플은 달보이스, 달빛 라이브, 하쿠나 라이브 등이 있는데 이러한 어플들은 초등학생도 방송을 운영하거나 시청할 수 있어 그루밍 성착취 통로로 이용된다⁵⁾. 온라인을 통해 일어나는 성착취는 점차 폐쇄적으로 1대1 관계에서 일어나며, 각종 전문화된 플랫폼을 통해 일어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3) 신고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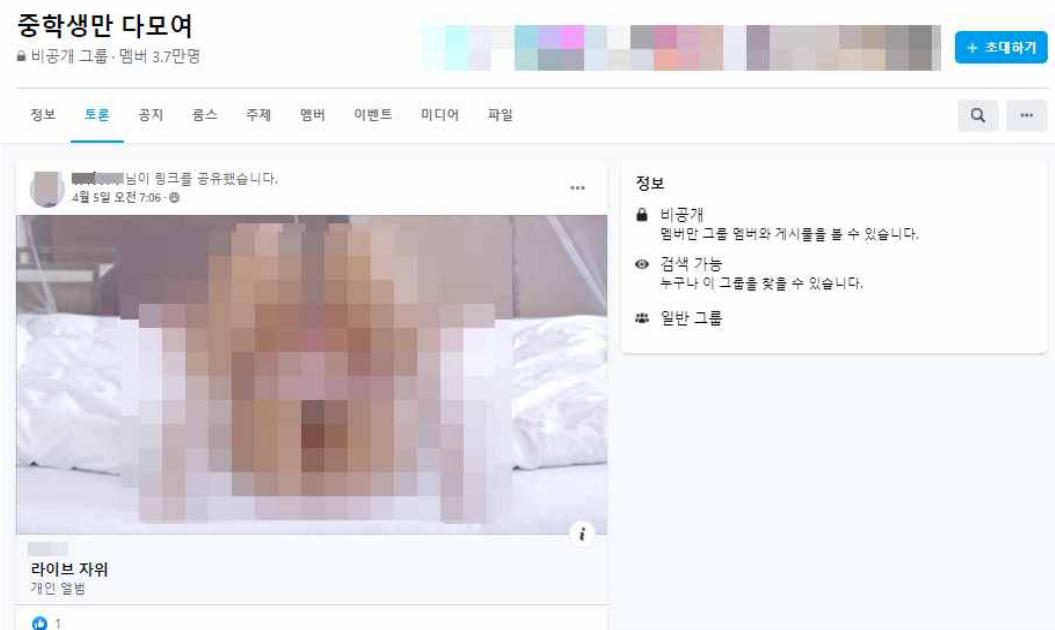
3개의 SNS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SNS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고창구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청소년 유해 및 불법 정보 게시물을 신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페이스북은 ‘질싸’, ‘입싸’, ‘얼싸’, ‘업스’, ‘돌립빵’, ‘폰섹’, ‘건오’, ‘자위영상’, ‘야사’, ‘로리’, ‘야1동’, ‘자위’, ‘실섹’의 총 14개의 해시태그를 통해 청소년 유해 및 불법정보 게시글 24개와 아동·청소년 성착취 게시글 3개를 발견하여 총 27개의 게시물을 신고하였다. 신고 사유는 성매매 업소 홍보나 성매매 사이트 홍보 경우에는 ‘허가되지 않은 판매-다른 문제’로 신고하였으며, 불법영상물 사이트는 ‘나체이미지 또는 성적인 콘텐츠-성적서비스’, ‘스팸’으로 신고하였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게시글은 ‘나체이미지-성적행위’로 신고하였다. 개인 계정에서 게시한 경우에는 계정 자체를 신고하기 위해 ‘부적절한 콘텐츠 게시’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27개 중 8개가 삭제 또는 차단되었으며, 19개는 신고에 따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성착취물 판매, 교환 등에 관한 게시물은 모두 삭제되었으나, 성매매 업소나 조건만남 사이트 홍보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삭제되지 않았다.

5) 한국일보. 2020.11.17. [단독] '초등생 1.3억' 하쿠나라이브, 미성년자 성착취 통로였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1413240003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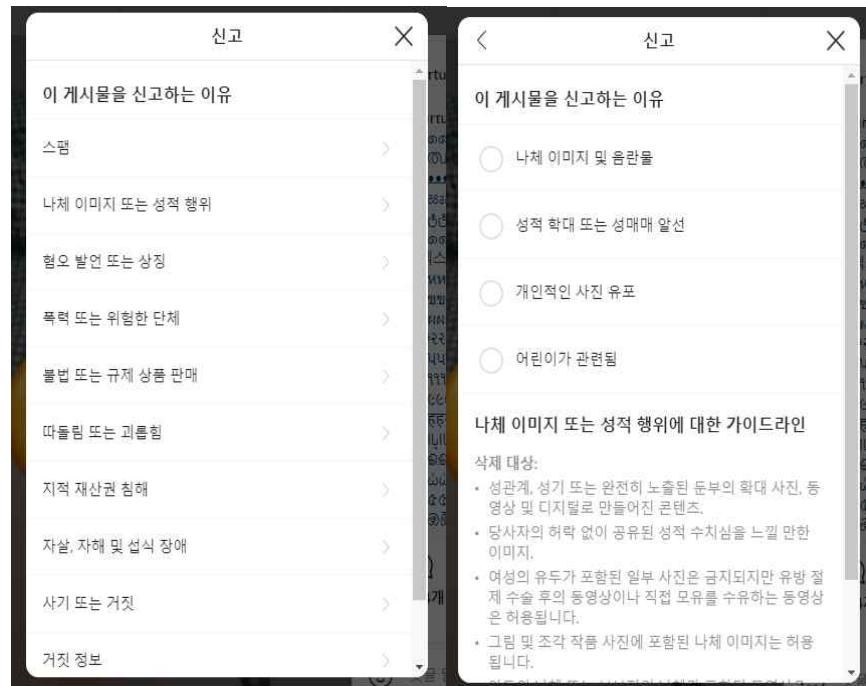


[그림 11] 페이스북 신고률 신고 카테고리



[그림 12]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신고 내용(페이스북 그룹)

인스타그램은 ‘빨통’, ‘검스’, ‘로리’, ‘근친’, ‘영상판매’의 총 5개 해시태그를 통해 게시된 아동·청소년 성착취 게시물을 발견하여 총 17개의 게시물을 신고하였다. 게시물의 주요 내용은 중학생, 고등학생 사진을 성매매 업소 홍보글에 사용하거나, 교복을 입고 있는 학생의 사진 등의 게시물이었다. 신고 사유는 ‘나체이미지 또는 성적행위-어린이가 관련됨’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17개 중 9개는 게시물이 삭제 또는 차단되었으며, 8개는 신고에 따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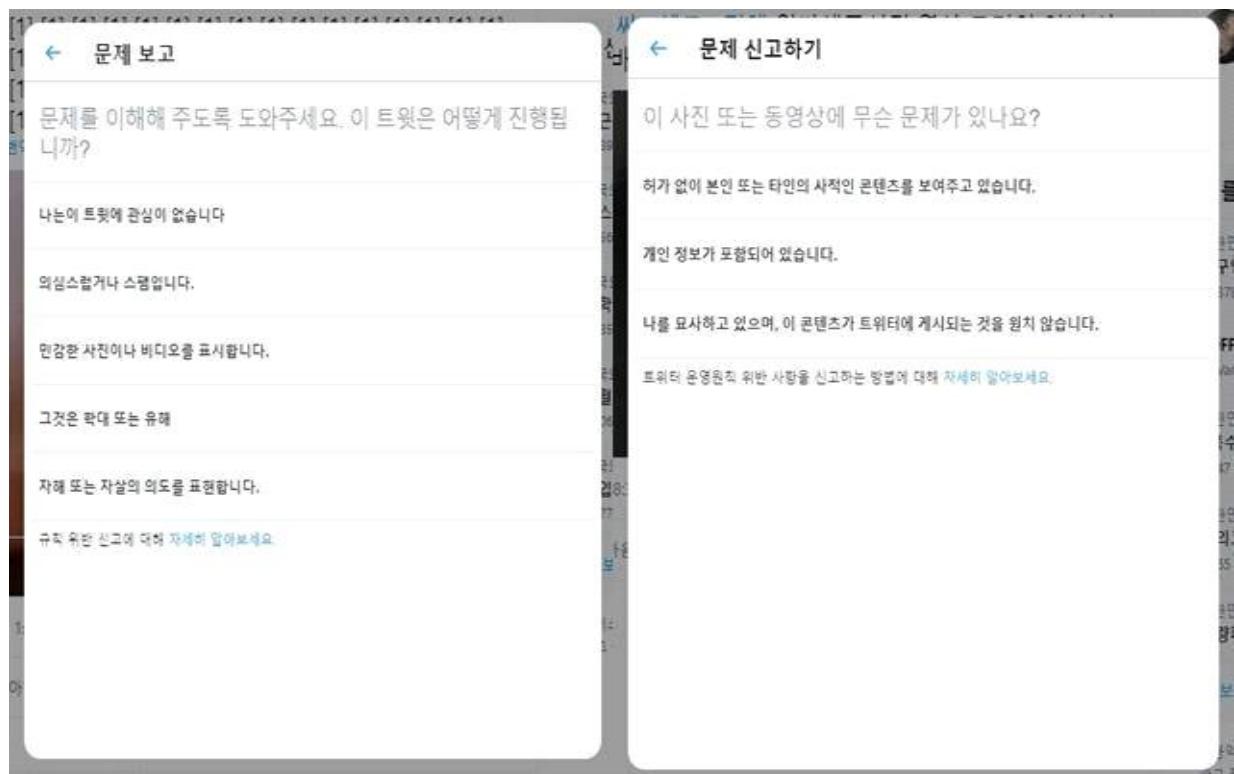


[그림 13] 인스타그램 게시물 신고 카테고리



[그림 1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신고 내용(인스타그램)

트위터는 ‘가슴’, ‘실섹’, ‘변녀’, ‘영상교환’, ‘정액’, ‘검스’, ‘얼싸’, ‘ㅇㅋ’, ‘빨통’, ‘자위’, ‘폰섹’, ‘오프’, ‘건오’, ‘쿨거래’, ‘초딩’, ‘고딩’, ‘영상판매’, ‘피해자 특정 검색어’ 총 18개 해시태그를 통해 게시된 아동·청소년 성착취 게시물을 발견하여 총 28개의 게시물을 신고하였다. 게시물의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자위영상 게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인능욕 또는 능욕글 작성, 지인박제 등의 게시물이었다. 신고 사유는 ‘민감한 사진 및 영상’과 ‘의심스럽거나 스팸입니다- 트렌드 또는 해시태그에 스팸을 올리고 있습니다’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28개 중 7개의 계정이 일시정지 되었으며, 1개의 계정은 삭제되었다. 20개는 신고에 따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계정 중 3개는 계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트위터의 경우 계정을 쉽게 삭제할 수 있고 재생성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가 자체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5] 트위터 게시물 신고 카테고리



[그림 16]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신고 내용(트위터)

3개 SNS 신고결과를 정리하면, 페이스북은 27개 중 8개가 삭제·차단 조치가 취해져 29.6%의 신고 조치율을 보였으며, 인스타그램은 17개 중 9개가 삭제·차단 조치가 취해져 52.9%의 신고 조치율을 보였다. 트위터는 28개 중 8개가 삭제·일시정지 조치가 취해져 28.5%의 신고 조치율을 보였다. 트위터는 근소한 차이로 가장 낮은 조치율을 보였으나, 대부분 계정 일시정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활동할 수 있으며, 게시글이 삭제되지 않아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본 기관에서 2020년 10월 ~ 2021년 2월까지 5개월간 진행한 트위터 내 성착취 관련 게시물 신고 1,909건 중 트위터에서 신고 조치한 건수는 57 건으로 나타나(탁틴내일, 2020) 다른 SNS에 비해 성착취 관련 게시물이 가장 많이 나타나지만 실제로 조치되는 경우는 신고율에 비해 적을 것으로 보인다.

4) SNS 정책비교

모니터링에 포함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의 각 정책을 비교하기 위해 공식 사이트에 게재된 안전 및 보안 관련 규정을 최우선으로 검토하였으며 아동 성착취 관련 예산, 수요, 개발, 성과, 조치, 그리고 관련 사건은 공식 게시글 및 뉴스 기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였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경우 모회사인 페이스북의 커뮤니티 규정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페이스북 ‘커뮤니티 규정(Community Standards)’의 ‘Ⅱ. 안전(Safety)’ 정책을 주로 검토하였고, 트위터의 경우 ‘안전 및 보안’을 포함한 ‘규정 및 정책’의 하위규정들을 부분적으로 포함하였다.

그 결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그리고 트위터는 각 서비스의 핵심가치에 따라 조금 다른 정책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경우 핵심 가치를 ‘안전하고 자유로운 커뮤니티의 제공’에 두고,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안전하게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즉 온라인 속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안전하고 평등한 지역사회를 위한 법률을 만들고 이를 직접 수행할 집행기관을 둔 것과 같다. 따라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규정은 폭력 및 범죄행위부터 개인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 타인에 대한 괴롭힘이나 혐오, 허위 뉴스, 지적 재산권 등 안전한 커뮤니티를 위한 넓은 범위의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트위터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가 핵심 가치로서, 사용자의 발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정보공유의 투명성 또한 중요시 여겨졌으며, 이를 위해 트위터는 미국의 권리장전 및 인권에 관한 유럽협약을 기반으로 정책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트위터의 정책은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폭력 및 범죄행위에 대한 규정을 기본적으로 제공하지만 저작권과 정보처리 방침, 법집행기관 수사 시 정보보호 및 이의 제기에 대한 지침 등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규정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각 플랫폼의 안전 및 보안규정 중 온라인 아동성착취와 관련된 규정을 비교한 결과, 플랫폼 별로 제공 및 실시되고 있는 안전규정의 차이가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경우 AI와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해 사용자가 신고하기 전 자발적인 콘텐츠 검열조치를 실시했고, 안전 및 보안팀에 의해 24시간 각 서비스 제공국의 언어로 콘텐츠가 검토되었다. 반면 트위터의 경우 콘텐츠 검열에 대한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계정, 트윗, 리스트 또는 쪽지에 대한 신고 방법을 자세하게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 제공자 측의 자

발적 검열보다 사용자의 신고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였다. 사용자의 신고에 따른 검토 및 조치에 관련해서는 세 개 플랫폼 모두 관련 규정 및 안내가 존재했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경우 신고된 콘텐츠를 안전 및 보안팀이 검토한 뒤 필요 시 온라인 범죄 관련 수사·법률 전문가가 추가로 검토하여 사법기관에 신고 조치하며, 감독위원회가 최종 결정권을 행사했다. 트위터의 경우 민감하거나 가학적인 콘텐츠의 경우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된 콘텐츠는 트위터 측에서 신고된 계정, 트윗, 리스트 또는 쪽지를 검토하고 신고자에게 신고 확인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미성년자 보호규정의 경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두 13세 이상만 계정생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포털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라이브러리 등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인스타그램의 경우 회원가입 시 나이 확인이 불필요해 규정이 온전히 적용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트위터의 경우 미성년자 보호 규정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회원가입 시 나이 확인이 불필요했다. 아동성착취 반대 규정은 세 개 플랫폼 모두 ‘무관용 정책’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페이스북이 아동성착취를 아동 성적 학대, 아동과의 부적절한 교류, 성적 대상화 등으로 분류하고 해당 행위를 상세하게 정의한 것에 비해 트위터는 아동성착취에 대한 일반적 분류를 제공하나 상세한 행위를 규정하는 대신 관용적인 표현을 사용해 아동성착취에 대한 상세 분류 및 정의는 다소 미흡해 보였다.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에 대한 규정 또한 세 개 플랫폼 모두 규정하고 있었으나, 트위터의 경우 포르노, 상호 합의 하에 제작된 다른 형태의 성인용 콘텐츠는 민감한 미디어로 표시될 경우 허용하고 있었고, 이를 보안 설정 내에서 사용자 스스로 설정하도록 되어있었다.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 촬영물(몰카)과 신체 노출, 특히 아동의 나체 이미지의 경우도 모두 규제 조항을 안내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트위터의 경우 사회적 현상으로 거론하거나, 미성년자에게 매력을 느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지원 요청 행동과 관련된 대화, 아동성착취에 대한 비방 표현 등의 경우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예외 조항을 제공하고 있었다. 아동의 나체 이미지 혹은 신체노출에 대해서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기근, 대량학살, 전쟁 범죄 또는 반인도적 범죄의 맥락에서 아동 나체 이미지를 묘사하는 뉴스 기관에서 게시한 이미지의 경우”에 한해 추가 정보 및 배경을 제출하여 승인된 경우 민감 콘텐츠라는 경고 레이블을 삽입해 개재할 수 있었고, 트위터는 예술 작품으로 미성년자를 소재로 삼거나 뉴스 보도, 교육 목적 등 “성적이지 않은 맥락이나 환경에서 미성년자의 신체 노출”이 묘사된 제한적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표 6> SNS 플랫폼 별 아동성착취 관련 안전 및 보안 규정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자율적 콘텐츠 검토 및 제재	O	O	X
신고콘텐츠 검토 및 조치	O	O	O
미성년자 보호규정	O	△	X
아동성착취 반대 규정	O	O	O
아동성착취 상세분류 및 정의	O	O	△
성매매 관련 콘텐츠 규제	O	O	△
몰카, 신체 노출 금지 규정	O	O	O
아동성착취 예외조항	X	X	O
아동 신체노출 예외조항	O	O	O

마지막으로 신고처리 절차는 세 플랫폼 모두 아동성착취물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서비스 제공자 측에서 검토 후 삭제 및 미국국립실종학대아동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이후 NCMEC)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신고 접수 후 NCMEC이 서비스 제공 당국 사법기관과 협조하여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검거를 실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차이점은 트위터의 경우 악의가 확인되지 않은 제한된 몇몇 경우 먼저 사용자에게 삭제요청을 하며, 해당 사용자는 계정 일시 정지 조치 이후 다시 계정 사용이 가능했다. 또한 트위터는 ‘신체적 위협이 있는 경우 지역 사법기구에 신고하시오’라는 조항이 존재하며 아동성착취물의 경우도 직접 NCMEC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었다. 이는 사용자의 자유와 권리를 중요시하는 만큼 서비스 제공자의 적극적 개입보다는 사용자가 스스로 사법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최종 결정은 사용자에게 맡기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경우 신고 콘텐츠를 검토하고 조치하는 것은 같았으나 콘텐츠 검토를 관련 전문가들이 추가로 검토한 뒤 사법기관에 신고조치하고 당국의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등 이후 사법적 조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규정 내 존재했다.

5. 논의 및 제언

1) 기업의 권한과 사용자 권리의 균형

연구 결과, 각 기업의 핵심가치와 그에 따른 정책이 아동성착취 발생 현황 및 대응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플랫폼 모두 안전 및 보안 규정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아동성착취 범죄와 관련해서는 무관용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나 플랫폼의 성격에 따라 아동성착취 관련 게시물이 공유되는 방법과 콘텐츠의 성격 등에 차이가 존재했다. 또한 이를 대응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또한 달라졌는데, 이는 사용자에게 보장하는 권리와 서버 관리자의 관리 권한의 정도 중 어느 쪽에 더 큰 비율을 두는가에 따라 차이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페이스북의 경우 서비스의 목표와 가치가 하나의 커뮤니티를 생성하는 것에 있기에 그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규칙이 존재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 관리자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커뮤니티의 관리가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으로 여겨지기에 꾸준한 자율적 모니터링 및 조치를 실행하고 있었다.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과 같은 정책을 따르고 있지만, 서비스의 성격이 보다 자유로운 시각 콘텐츠의 게시이며 페이스북보다 간략한 업로드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에 안전 및 보안 규정을 통한 완벽한 규제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업 자체 모니터링과 조치의 경우 페이스북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기 때문에 적나라한 콘텐츠의 경우 삭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였다. 트위터의 경우 이전의 두 플랫폼과는 달리 서비스 제공의 목적이 자유롭게 개인의 의견을 표출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고, 정책 또한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범죄를 경계하는 한편 고유성, 저작권, 상표, 표현의 자유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존재했다. 따라서 ‘검열’의 성향을 떨 수 있는 기업의 자율적 모니터링 및 조치보다 사용자들의 주도적 신고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제 콘텐츠의 경우에도 미리 민감 콘텐츠로 표기한다면 사용이 가능하고 사법기관의 조치에도 사용자가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제공해주었다.

이러한 기업적 성향 및 조치 방법은 트위터가 다른 플랫폼과 비교했을 때 아동성착취 범죄에의 악용에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보였다. 이전에 아동성착취물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했던 텀블러, 텔레그램 등의 플랫폼과 트위터는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

인정보 보호'를 기업의 제재 권한보다 크게 둔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다. 이는 정당한 의견의 표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함이라는 서비스 제공자의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마약거래, 무기밀매, 인신매매 등 여러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높다는 것을 외면할 수 없다. 온라인이 또 다른 하나의 '사회'가 되어가는 지금,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도 범죄는 사회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며 증가 및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선한 의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 및 비밀보장 또한 중요하지만, 기업의 자율적 모니터링과 엄격한 제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2) 수사전담 기구

조사 결과, 플랫폼별로 차이는 존재하지만 신고된 콘텐츠에 따른 조치가 기본적으로 실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콘텐츠 관리자의 권한 정도와 규모에 따라 조치 비율에 차이가 존재했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보안규정과 그에 따른 검열 및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AI에 발견되지 않을 암호화 된 해시태그를 이용하는 등, 검열 시스템을 피하는 방법이 끊임없이 발견되고 공유되고 있었다. 서비스 관리자 또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 시스템을 지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고 사회기관과의 협력을 시행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한계가 존재한다. 기업 자체 모니터링 외에도 사회단체에서 SNS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아동성 착취 콘텐츠에 대한 신고를 실행하고 있지만, 통일되지 않은 모니터링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서비스 제공자 또한 삭제 조치 외 실질적인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기에 본질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단순 게시글 삭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악용하는 범죄자에게 접근하여 검거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실행해야 하는 부분이다. 페이스북 등의 정책에는 아동성 착취 콘텐츠의 경우 NCMEC에 신고하여 당국의 협력을 요청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내 수사기관 중 온라인 아동성 착취를 수사·검거 할 전담 기구가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요청 및 협력이 어렵다는 실정이다.

2021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온라인 그루밍과 위장 수사에 대한 시행이 가능해졌지만 온라인 아동성 착취 제재를 위한 수사전담기구의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과제다. 현실의 아동성 착취 범죄를 민간기업이나 사회단체가 해결할 수 없듯이, 온라인을 하나의 사회로 생각한다면 이러한 전담 수사기구의 존재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미국의 경

우 아동대상 인터넷범죄수사 전담팀(ICAC Task Force)이 존재하고, 영국의 경우 국립범죄청의 아동착취 및 온라인보호 지휘팀(CEOP)이 성적 목적으로 아동을 유인하는 광고, 포스팅, 게시글 등을 모니터링하며 위장수사 기법 등을 통해 가해자에게 접근, 아동성착취가 명확해지는 즉시 범죄자를 체포하고 있다. 2020년 탁틴내일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성폭력 발생 시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중 하나는 경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였다 (서울시, 탁틴내일, 2020). 아무리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삭제조치를 한다 해도 아동성착취 범죄자들은 계정을 바꾸어가며 보다 치밀한 방법을 통해 온라인 아동 성착취를 저지를 것이다. 계속 치밀해지고 심각해지는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범죄의 핵심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으며 즉각적 수사 및 검거를 시행할 수 있는 전담 수사기구를 설립하고, 전문적인 수사요원 양성과 역량강화를 통해 수사기법과 역량을 발전시켜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의 근원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향후 과제

2002년 연구에 의하면,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자의 연령은 25세에서 50대 사이로 중년층의 수가 더 높았다(Burke, et al., 2002). 그러나 근래 발생한 웨컴투비디오 혹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연령이 30세 이하였으며 10대 후반인 경우가 높았다. 국내 범죄뿐만 아니라 웨컴투비디오 사건 이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라고 일컬어졌던 ‘차일드플레이(Child’s Play)’ 다크웹 사건의 경우에도 가해자의 연령이 20대로 밝혀져 논란은 빚은 적 있다. 심지어 그들이 범죄를 지속해온 시간을 고려하자면 10대의 나이에 범죄를 주도하거나 가담했다는 사실이다. 10년의 시간 사이에 가해자의 연령이 급격히 낮아지게 된 이유로는 젊은 계층의 정보통신기술 사용역량의 강화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통한 범죄기술의 변화 등이 있겠지만,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 부족과 범죄인식의 부재 등 사회적인 문제 또한 존재할 것이다.

또한 이전의 아동성착취물 범죄가 성적인 욕구를 목적으로 한 것에 비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최근 범죄의 경우 경제적인 이득의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이유를 위해 타인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범죄조직을 구성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이미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가 음지의 이상성범죄나 불법 ‘야동’의 수준이 아닌 마약 제조 및 유통과 같은 조직범죄의 수준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마약 공장과도 같이 조직

적으로 타인을 협박, 강요, 착취하고 그에 대한 결과물을 공급책과 유통경로를 통해 수백, 수만 명에게 판매하는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 범죄는 그 심각성과 확산성에서 마약범죄와 다르지 않으며, 마땅히 같은 수준의 엄격한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심각한 온라인 아동 성착취 범죄를 예방·근절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변화하는 범죄수법과 동향을 연구하고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 수법에 대한 분석과 이 외에도 가해자의 특성, 사회인식의 영향, 재범위험성 분석 등 여러 방면에서의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범죄 수법 동향을 반영하여 제도와 규제를 만들고 이를 시행하려는 기업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범죄 수법을 강화시키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안에서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플랫폼의 업데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한 불법 정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셋째, 시민(이용자) 및 단체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기업의 규제가 강화되고 제도적인 보완이 마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자의 관점에서 사업자가 규제를 지키고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지 관심과 감시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적 이용을 위한 모니터링이 지속되어야 한다. 더불어 시민(이용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희 · 김수아 · 김은경. (2019). “디지털환경에서의 학생 성폭력 실태조사 및정책개선방안 연구”, 「2019년 교육부 정책보고서」.
- 김소라. (2019b). “디지털 자본주의와 성폭력 산업”, 「여성이론」, 41: 10-26.
- 김소라. (2018). “디지털 성폭력의 변화 양상과 ‘음란성’(obscenity)을 근거로 한 규제의 한계”, 「아시아여성연구」, 57(1): 163-199.
- 김한균. (2020). “디지털 성범죄 차단과 처단: 기술매개 젠더기반 폭력의 형사정책”, 「저스티스」, 178: 369-392.
- 김현아 · 김숙희 · 김영미 · 장윤정 · 서승희 · 박지영. (2018).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지원 방안 연구”,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박수연 · Rune · Viral · 김이나. (2017). “닮아있는 ‘일본,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착취되는 여성”, 「여성이론」, 36: 198-211.
- 오세연 · 신현주. (2020).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실태 및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정보연구」, 6(1): 97-120.
- 윤덕경 · 전혜상 · 천재영 · 강지명. (2020).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발전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용역보고서.
- 이성식 · 강은영 · 최수형. (2015). “청소년의 스마트폰중독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학」, 9(2): 69-102.
- 이성식 · 박정선. (2014). “청소년 모바일매체 이용 상의 문자폭력 원인: 세 주요 요인들의 통합적 모색”, 「한국범죄학」, 8(3): 3-29.
- 이수연 · 이혜림 · 김수아 · 김하얀. (2014).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지선 · 이성식. (2019). “대학생들의 스마트폰을 통한 음란물유포 행위의 설명: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상호작용효과와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3(3): 5-24.
- 장다혜 · 김수아. (2018).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변화에 따른 처벌 및 규제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선미 · 하예나. (2017). “발제 1: 매체별로 보는 디지털 성폭력 실태 · 양상”,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 토론회」 발제문.

- 조소연. (2017). “디지털 성폭력에 맞서다”,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11: 25-53.
- 조주은 · 최진웅. (2018).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의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서울: 국회입법조사처1+2.
- 최소윤 · 한민경. (2020). 사이버 음란물에서 ‘기술매개 젠더기반 폭력’ 까지: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한국범죄학」, 14(2), 145-168p.
- 최용성 · 곽대훈. (2020).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합리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2(2): 221-248.
- 최란. (2018). 「디지털 성폭력 현황과 대응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탁틴내일. (2020) 아동 · 청소년 디지털성범죄 Safe Seoul 활동보고서, 33.
- 한희정. (2018). “사이버 성폭력에 맞서 싸운 여성들: 불법 촬영물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문화」, 33(3): 213-255.
- 황승흠. (2014). 인터넷 자율규제와 법. 커뮤니케이션북스.

뉴스1 (2020.03.25.) “25살 조주빈에게 100억 안겨준 ‘박사방’: ‘N번방’ 파헤치기”

<https://tv.naver.com/v/13045728>.

- Burke, A., Sowerbutts, S., Blundell, B., & Sherry, M. (2002). Child pornography and the Internet: Policing and treatment issues.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9(1), 79-84.
- Canadian Centre for Child Protection (2016). *Child sexual abuse images on the internet: A cybertip.ca analysis*. Winnipeg: Canadian Centre for child protection.
-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re . (2010). *Annual Review 2009-2010*. Retrieved from <http://ceop.police.uk/Publications/>
- Durkin, K. F., & Bryant, C. D. (1995). “Log on to sex” : Some notes on the carnal computer and erotic cyberspace as an emerging research frontier. *Deviant Behavior*, 16(3), 179-200.
- Interagency Working Group. (2016). *Terminology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Retrieved from www.interpol.int/Media/Files/News-Media-releases/2016/TerminologyGuidelines.
- Interpol & ECPAT (2018). *Towards a global indicator on unidentified victims in child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technical report. ECPAT International: Bangkok, Thailand.

Rimer, R. J. (2019). “In the street they’re real, in a picture they’re not: Constructions of children and childhood among users of online child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Child Abuse & Neglect*, 90, 160–173.